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8.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호(2021.8.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모임·행사>

■ 사적모임 예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직계가족 ▲ 돌잔치 ▲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상견례(8인) ▲ 돌잔치(16인) ▲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돌잔치(전문점→‘돌잔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인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제한에 의함

■ (행사) 4단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1그룹 시설* 전체	중전과 같음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3~4단계 동일 조치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3~4단계 동일 조치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 (관객수) 6㎡당1명+ 최대 2,000명 ▲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용)	▲ 공연개최 금지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
실외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
전시회·박람회	▲ 부스내 상주인력 최대 2명 (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 예약제 운영(의무)	▲ 부스내 상주인력 최대 2명 (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 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행사)	▲ 50인 미만 참석 가능 (동선 분리되는 공간별)	▲ 50인 미만 참석 가능 (인원나누기 금지)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
이미용업	중전과 같음	▲ 운영시간 제한 삭제	3그룹 → 기타그룹
종교시설	▲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최대 99명) -100명 이하: 최대 10명	비대면 예배운영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1)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 모임·행사 인원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을 상세히 안내·지도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붙임2)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의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식품안전상생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전북음식문화연구회, 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한국급식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집단급식조리협회, 한국커피과학회, 한국향미유훈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푸드원텍(주),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교육원, (주)한국식품정보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주)세스코,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주)에프엠코리아스,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해숲식품안전솔루션,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양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식품안전정보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육가공업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식육운송협회, 한국난가공업협회, 대한아이스크림협회, 한국유가공업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수입육협회, 전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대한수의사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28개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협중앙회장, 주류안전협회

주무관	최수진	식품위생사무 관	심연	식품관리총괄과장 <small>전결 2021. 8. 6.</small> 최종동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6261 (2021. 8. 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관리총괄과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60	팩스번호	043-719-2050	lab98sj@korea.kr / 비공개(5)